

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

2026. 4.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년 12월 19일, 최민희의원 · 이상희의원
등 15인

나. 회부일자: 2025년 12월 2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32회 국회(임시회)

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2026.2.25.) 상정, 제안설명,
검토보고, 대체토론, 소위원회부

제433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(2026.3.10.) 상정, 축조심사,
의결(대안반영 폐기)

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2026.3.11.) 상정, 소위심사보고,
의결(대안반영 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: 최민희의원 · 이상희의원)

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.

그러나 현행 지원 체계는 소관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어 우수한 역량을 갖춘 대학들이 국가 핵심 과학기술 사업에 참여하거나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. 특히 포항공과대학교(POSTECH),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(KENTECH) 등과 같이 설립 목적이 과학기술 특성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관련 국가 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.

이에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2 신설).

3.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: 강대훈)

개정안은 포항공대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‘과학기술특성화대학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지정된 대학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현행 인

력양성 지원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보완 필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음.

다만, 현행법 제11조¹⁾에 이미 개정안과 유사한 목적으로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는 ‘연구중심대학’의 선정·지원 근거가 있으나 현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소관 관련 지원사업은 별도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바, 새로운 대학 유형(과학기술특성화대학)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 음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최형두위원)

개정안은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.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 음

7. 심사결과

1)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」 제11조(연구중심대학의 육성·지원) ①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이공계인력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는 대학(이하 “연구중심대학”이라 한다)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② 연구중심대학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대안반영 폐기